



부가가치세 신고 안내

▶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사업자	과세기간	확정 신고대상	확정 신고 납부기간
일반과세자	제1기 1.1.~6.30.	1.1.~6.30. 까지 사업실적	7.1.~7.25.
	제2기 7.1.~12.31.	7.1.~12.31. 까지 사업실적	다음해 1.1.~1.25.
간이과세자	1.1.~12.31.	1.1.~12.31 까지 사업실적	다음해 1.1.~1.25.

▶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/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합니다.[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·납부(4월, 10월) 및 확정 신고·납부(7월, 다음해 1월)]

※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「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→ 성실신고지원 → 부가가치세」를 참조 바랍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 안내

▶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(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)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▶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※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「국세청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성실신고지원 → 종합소득세」를 참조 바랍니다.

편리한 인터넷 서비스 / 세무상담 이용

▶ (신청·제출, 세금신고·납부, 조회/발급, 국세증명 발급) 대부분의 국세 사무를 인터넷 (www.hometax.go.kr)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▶ (국세증명) 인터넷(홈택스, 민원24)과 읍·면·동사무소 민원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▶ (전화상담) 문의사항이 있으면 126으로 전화하신 후 아래 번호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					2	3	4
(1)	(2)	(3)	(4)	(5)			
현금영수증	전자 세금계산서	신고납부 증명발급	학자금상환	연말정산 간소화	세법상담	세금고충상담	탈세 등 각종 제보

※ 상담시간 : 월~금 오전 9시~오후 6시 (탈세신고는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.)

▶ (인터넷상담)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로 접속하여 상담/제보 →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신 후 인터넷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이 밖에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

▶ (4대 사회보험신고)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은 가까운 담당기관들 중 한 곳에서 통합신고 가능하며, 인터넷(www.4insure.or.kr)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구 분	국민연금	건강보험	고용보험 / 산재보험	
의무가입	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		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	
보험료부담	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/2씩 부담		고용보험	(실업급여) 사업주 근로자 각 1/2씩 부담 (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) 사업주 전액부담
			산재보험	사업주 전액 부담
담당기관	국민연금공단	건강보험공단	근로복지공단	
상담전화	1355	1577-1000	1588-0075	

▶ (그 밖에 사업시 알아야 할 세무정보) 세무서에서 배부해 드리는 **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** 책자를 자세히 읽어보거나,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및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이용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.